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3일 13시 54분



목차

목차	2
공지사항	3
전라남도 방역관리자 지정 및 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	3

전라남도 방역관리자 지정 및 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

2021.11.03 조회수 423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김대건 연락처 061-659-3236

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○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- 제6조제4항(국민의권리와 의무), 제46조제3호(건강진단및예방접종 등의 조치), 제49조제1항제3호(감염병의 예방조치)

○ 처분기간 : 2021. 11. 4.(목) 0시 ~ 별도 공지일까지

○ 처분내용

가. 방역취약시설 2주 1회 진단검사 의무부과

① 외국인 고용사업장(내외국인 모두 포함)

②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(내외국인 모두 포함)

③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

※ ①, ②, ③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

④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(예방접종완료자도 진단검사 실시)

→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근무 시작 전 반드시 진단검사 '음성'확인

나. 행사, 집회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조치 이행 의무부과

① 모든 행사, 집회는 방역관리자(1인 이상)를 필수 지정(시·군 방역 관련 부서에 신고)

② 100인 이상 행사, 집회의 경우, 방역관리자는 접종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의 행사 참여를 제한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📄 2021.11.03.(수) 행정명령서(수정).hwp (269 hit / 248.0 KB) ↓

미리보기

이전글

2021년 전남영상위원회와 함께 하는 바퀴 달린 영..

다음글

예술인촌 옥적갤러리 휴으로, 판으로 교육프로그램...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